2026.11.23.

KiRi 리포트

영국의 캡티브보험 규제 체계 도입 추진 동향

| 글로벌 이슈 |

김혜란 연구원

요 약

영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위험관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캡티브보험 규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초기에는 단일 모기업 캡티브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비계열회사의 위험도 인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임. 또한 캡티브보험회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요건, 지배구조,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인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국 내 캡티브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26년 7월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캡티브보험 규제 체계를 제안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음[1)]

- 영국 정부는 2024년 11월 재무부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25년 7월 의견수렴 응답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촉진 및 기업의 위험관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캡티브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함[2)]
  - 캡티브보험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소유한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를 통해 자사의 위험을 인수·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시장에서 보장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은 위험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영국은 일부 자본요건 산출방법 간소화를 제외하면 캡티브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없어,[3)] 일반 보험회사와 대체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해외에 캡티브보험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FTSE 100) 중 40% 이상이 캡티브보험의 중심지인 건지(Guernsey)[4)]에 캡티브보험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5)]
- 영국은 2027년 중반 시행을 목표로 캡티브보험회사의 설립 및 소유구조, 위험인수 범위, 자본요건, 지배구조 및 인가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제도는 초기에는 단일 모기업이 완전 소유한 순수 캡티브보험회사(Single-parent captive)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일부 위험을 제외한 기업위험을 직접 또는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 PRA는 단일 모기업 캡티브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거의 없으며, 파산 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함
- 캡티브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위험을 인수하되, 모기업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비계열회사의 위험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1) PRA(2026. 7. 14.), "CP11/26 – A Tailored Regime for Captive Insurance"
2) HM Treasury(2025. 7. 15.), "Captive insurance: Consultation response"
3) 솔벤시 UK의 캡티브보험회사 또는 캡티브재보험회사는 표준 공식에 기반한 지급여력자본요구량(SCR)에 대해 간소화된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Solvency Capital Requirement – Standard Formula 7.3)
4) 건지(Guernsey)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위치한 섬이자 영국 왕실령으로, 자체 의회와 법률·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Frontier Economics(2024. 1.), "Value of Guernsey Financial Services to the UK"

- 비계열회사 중 위험인수가 허용되는 대상은 직접 공급업체(하도급업체 제외), 같은 업종의 가맹점, 모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지배권·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5% 이상 20% 미만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회사, 소유자 통제형 보험프로그램(Owne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 OCIP)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제한함
- OCIP는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발주자가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등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며, OCIP를 제외한 비계열회사 위험은 전체 사업량의 10%(순수입보험료와 순보험부채 중 작은 값 기준)로 제한하며, 매출 100만 파운드 미만의 비계열회사 위험은 재보험 방식으로만 인수할 수 있음

• 캡티브보험회사는 손해보험을 직접 또는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 및 제3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위험은 재보험 방식으로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수를 금지함

- 의무보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보험, 복수 점유 건물보험(Multi-occupancy building insurance), 임원배상책임(D&O) 등 특정 개인이 수익자인 일부 기업위험은 재보험 방식으로만 인수할 수 있으며, 재산, 배상책임, 사이버, 운송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위험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음
- 생명보험(임직원 복리후생 제외)·연금·투자위험 보장의 인수는 금지됨

○ **영국은 캡티브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솔벤시 UK와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자본요건과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인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6)]**

• PRA는 캡티브보험회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솔벤시 UK를 적용하기보다는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별도의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 PRA는 솔벤시 UK의 캡티브보험회사(Captive insurer) 및 캡티브재보험회사(Captive reinsurer) 명칭을 각각 그룹 내 보험회사(Intragroup insurer)와 그룹 내 재보험회사(Intragroup reinsurer)로 변경하여 신규 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따라 기존의 복잡한 위험기반 자본요건 및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부담을 줄일 계획임(〈표 1〉 참조)

○ **다만 세제 차이에 따라 건지 등 기존 캡티브 거점과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룹·협회 캡티브와 PCC(Protected Cell Company)는 2단계에서 다룰 예정임**

〈표 1〉 영국 캡티브보험 규제 개편안의 주요 제안 내용

구분	현행 규제 체계(솔벤시 UK)	캡티브 규제안
인가 및 감독	인가 기간 약 4~6개월, 상시 감독 중심	인가 기간 4~6주 목표, 인가단계 심사 강화 및 사후 대응형 감독
자본요건	최소자본요구량(MCR)과 위험기반 지급여력자본요구량(SCR)을 적용, 엄격한 자본기준 적용	순보험부채 또는 순보험료의 10% 중 큰 금액을 자본요건(CCR)으로 설정하되, 최소 10만 파운드는 1등급 자본, 초과분은 2등급 자본 허용
지배구조	상세한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하고, 복수의 고위관리자 직무(SMF) 지정 요구	지배구조 요건을 간소화하고 SMF 지정 의무를 축소하며, 일부 업무의 외부위탁 허용
투자	그룹 내 대출을 포함한 투자활동에 신중한 투자자 원칙(PPP) 적용	그룹 내 대출 허용, 주요 투자위험 중심의 비례적 감독기준 적용
보고	다양한 정량보고서를 분기 및 연간 단위로 제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연간 보고서 제출

자료: Bank of England(2026. 7. 14.), "CP11/26 – A Tailored Regime for Captive Insurance", Table 6

6) Bank of England(2026. 7. 14.), "CP11/26 – A Tailored Regime for Captive Insurance"